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간이공판절차의 확대 적용〉

■ 최기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28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 주요내용	3
2. 현행제도 개관	5
3. 검토의견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최기상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5. 6. 23.
3. 회 부 일: 2025. 6. 24.

II. 제안이유

현행법 제286조의2에서는 간이한 방식의 증거조사에 의할 수 있는 간이공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백하지는 않지만 간이한 방식의 증거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할 수 없음.

이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를 간이공판절차 적용 범위에 포함하면 법원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재판의 실현을 통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사실관계가 쟁점인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 심리하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양형 판단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간이공판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이공판절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형사공판(제1심) 피고인(239,997명) 중 변호사(국선·사선)를 선임하지 않은 피고인(75,554명)의 비율은 31.5%인데, 통상적으로 변호인 없는 사건이 자백 사건이거나 법리만 다투는 덜 복잡한 경우가 많고, 현행 제도에서 피고인의 자백 시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법관이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없는 사건의 피고인도 간이공판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함.

이에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으로 당사자의 신청 및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신속한 재판의 실현을 통한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6조의2, 제286조의3).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을 확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있는 경우 외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86조의2), 이에 따라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취소 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86조의2).

현행	개정안
第286條의2(簡易公判節次의 決定) <u>被告人이 公判廷에서 公訴事實에 對하여 自白한 때에는 法院은 그 公訴事實에 限하여 簡易公判節次에 依하여 審判할 것을 決定할 수 있다.</u>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u>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u> 1.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 2.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한 때.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또는 동의할 수 있다.
第286條의3(決定의 取消) 法院은 前條의 決定을 한 事件에 對하여 被告人의 自白이 信憑할 수	제286조의3(결정의 취소) 법원은 제286조의2의 결정을 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없다고 認定되거나 簡易公判節次로 審判하는 것이 顯著히 不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檢事의 意見을 들어 그 決定을 取消하여야 한다.</u>	<u>해당하는 경우 檢事,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u>1. 피고인이 자백하여 제286조의2제1호에 따라 간이공판절차의 決定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u> <u>2.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不當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	--

2. 현행제도 개관

가. 간이공판절차¹⁾의 의의 및 취지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절차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엄격한 증거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간이한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간이공판절차에서도 피고인에게는 변론권, 증거신청권 등 방어권이 보장되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개 법정에서 공판절차를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는 점에서 서면심사만을 하는 약식 절차와 구별됨.

나. 현행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및 절차

현행법상 간이공판절차의 유일한 요건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인데, 자백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공소사실의 일부만을 자백한 경우에는 자백한 부분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 있음.

1)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 사건의 성질, 증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조사 방식이 간이화²⁾되고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³⁾가 적용됨. 구체적으로는 일반적인 증인신문 방식(제161조의2, 제297조), 증거조사 방식(제290조내지 제293조)을 적용하지 않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전문 증거에 대한 동의가 간주(제318조의2, 제318조제1항)되어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법원은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한 후에도 ①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②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함⁴⁾.

다. 간이공판절차의 운영 현황

2) 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3) 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86조의3(결정의 취소)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간이공판절차는 실무상 활용도가 매우 낮는데, 그 이유는 첫째, 간이공판 절차의 요건이 ‘피고인의 자백’으로 한정되어 있어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증거조사의 간이화 정도가 크지 않아 소송경제 효과가 제한적인 점, 둘째, 피고인이 자백을 번복하는 경우 간이공판절차 결정을 취소하고 통상의 공판 절차로 전환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점, 셋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 하는 경우 간이공판절차보다는 서면만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약식절차를 더 많이 활용한다는 점임.

다만, 약식절차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발할 수 있어 소송경제 효과가 크나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한정되는 점(제448조⁵⁾)에서 한계가 있음.

3. 검토의견

개정안은 피고인의 자백이 없이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과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고,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추구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5)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간이공판절차는 증거조사 방식을 간소화하고 증거동의를 의뢰함으로써 증거조사의 엄격성을 완화하는 제도임. 이는 소송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투영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근간으로 하되 직권주의적 요소를 보충한 절충적 구조를 취하고 있음.⁶⁾

따라서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가 가능⁷⁾하고, 부실한 심리가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평가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의 동의만으로 증거조사의 엄격성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063

6) 이재상, 조균석, 이창온, 『형사소송법(제16판)』, 박영사(2025년), 422-423면

7)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8)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후1688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